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4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은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16.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가합20647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 2. 5. 접수 제5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인데 피고 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아래 나. 1) 내지 4) 각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은 4가지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데, 피고 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부정)

1) 피고 B 발행 주식에 관한 추심권한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등의 피고 B에 대한 주식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9타채9058)을 받은 추심채권자인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추심권한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써,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추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물인 주식을 청구할 채권이므로, 이는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정금 채권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대표이사 G가 원고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H회사의 I 팀장에게 추심금 391,310,000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약정금 채권을 가진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자대위권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처분함으로써 D 등 피고 B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고, 이로 인해 D은 275,000,000원(27,500주 × 1만 원), E은 88,810,000원(8,881주 × 1만 원), F은 27,500,000원(2,750주 × 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D 등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D 등을 대위하여 D 등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채무자 피고 B를 상대로 행사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2020. 2. 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상법이 정한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가치는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비례하므로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여 주식의 가치도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상법이 예정한 것일 뿐 상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B가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주주인 D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B가 주주인 D 등에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채권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D 등 주주와 공모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에 매도하여 D 등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만들어 원고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하거나, D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으로 판결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B가 D 등 주주와 공모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거나, D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가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판단 (배척)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거나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별지목록

1.

[토지] 경상북도 경산시

지목 공장용지

면적 3481㎡

2.

[건물] 경상북도 경산시

건물내역

☐ 동

철골조 패널지붕 2층 공장

1층 921.90㎡ 2층 922.52㎡

☐ 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 및 사무실

지층 창고 100.98㎡

1층 창고 191.52㎡

2층 사무실 191.52㎡

☐ 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파이프조 패널 및 스라브지붕 단층 창고 및 공장

583.54㎡

☐ 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

1층 216㎡ 2층 216㎡

☐ 동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경비실 및 창고 48.6㎡

